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2. 11. 25 선고 2021가단484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만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박정훈

변 론 종 결 2022. 10. 21.

판 결 선 고 2022. 11. 25.

주 문

1.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10. 체결된 재산분할 협의를 52,036,08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52,036,0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C은 원고에게 74,299,61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6.부터 2022. 11.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4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주문 제2항 및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8. 10. 체결된 재산분할 협의를 취소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74,299,61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 가. 피고 C과 피고 B은 1975. 2. 15. 혼인신고를 마친 뒤, 2018. 8. 9. 협의이혼하였다.
- 나. 피고 C은 충북 영동군 D 대 493㎡에 관하여 2011. 9.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1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C은 2011. 12. 12.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22,800,000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E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다. 피고 C은 2016. 8. 31.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60개월 동안 원리금균등상환 방식, 대출금리 연 10.9%로 정하여 13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 라. 피고 C은 2018. 5. 4.부터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가 F에 2018. 5. 4.부터 2021. 9. 6.까지 합계 74,299,617원을 변제하였다.
- 마. 피고 C은 2018. 8. 14. 피고 B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충북 영동군 D 대 493㎡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10. 재산분할(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이라 한다)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충북 영동군 D 대 493㎡ 토지는 2020. 12. 1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과 충북 영동군 G 대 61㎡로 분할되었다.

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21. 4. 16.에 2021. 4. 13.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가 이루어졌다.

아. 피고 C은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수탁보증인으로서 민법 제441조 제1항에 의해 원고의 출재로 피고 C의 F에 대한 대출 원리금 채무를 소멸시킨 범위에서 피고 C에 대한 사후구상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74,299,617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21. 9. 6.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2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21.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로서는 대위변제일 이후의 대위변제액에 관한 법정이자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정이자에 상법에서 정한 연 6%이므로(민법 제425조 제2항,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다7085 판결 등 참조), 2021. 9. 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6%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취소권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다26335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재산분할 협의는 2018. 8. 10.에 있었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2018. 5. 4.부터 2021. 9. 7.까지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원고가 F에 2018. 5. 4. 대위변제한 2,925,900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재산분할 협의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2018. 9. 12.부터 2021. 9. 7.까지 대위변제한 부분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경우 이 사건 재산분할 협의 당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였고, 피고 C이 F에 대한 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2018. 5. 4.경부터 이미 원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시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산분할 협의 당시 가까운 장래에 보증사고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구상금 청구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피고 C의 무자력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재산분할 협의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들 대리인은 2022. 4. 8.자 변론기일에 ‘피고 C 명의로 된 재산 전부를 피고 B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재산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써,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한하여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법원으로서의 채권자의 증명에 따라 부부 쌍방의 재산 보유 상황 등 두 사람의 혼인 이후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채무자의 배우자가 받을 적절한 재산분할의 액수를 확정한 다음 이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 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은 각자 혼인기간 동안의 재산증식에 서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도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들의 혼인관계 파탄이 당사자 일방의 유책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피고 B은 피고 C의 폭행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및 피고들의 혼인기간, 나이, 직업,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실상 부부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의 단독 재산으로 하는 이 사건 분할계약은 재산분할로는 상당하지 않은 과대한 것이고, 피고들 사이의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2 지분씩의 분할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들의 사해의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재산분할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 부족이 심화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자인 피고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가)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참조).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피보전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며,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E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H 중부지사장에 대한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2022. 8. 10.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15,466,56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위와 같을 것으로 추인되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될 당시 E은행의 피담보채무액이 11,394,393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 협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 당시 가액인 115,466,560원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11,394,393원을 공제한 104,072,167원(=115,466,560원 - 11,394,393원) 중 피고 B에게 분할되어야 할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52,036,083원(=104,072,167원 × 50%, 원 미만 버림)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은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52,036,0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부분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승욱

별지

부동산 목록

1. 충북 영동군 D 대 432㎡

2. 충북 영동군 D

[도로명주소] 충북 영동군 I

위 지상

경량철골구조 아스팔트씽글지붕

단독주택 114.88㎡, 끝.

